

2021년 4분기 예산 전용 및 변경 보고

□ 개 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보고내용 : 2021년 4분기 예산 전용 및 변경 보고

※ 예산전용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
(목그룹 : 인건바-100, 물건바-200, 경상이전-300, 자본지출-400 등)

□ 2021년 4분기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 : 총 2건, 349,800천원

- 예산 전용 : 1건, 345,000천원 / 예산 변경 : 1건, 4,8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감액	증액	승인일	전용 및 변경 사유
계					349,800	349,800	
1	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(안심마을보안관 운영)	사무관리비 (201-01)	1,063,520	345,000	-	21.10.13.	<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관련> - '21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, '민간 전문경비업체 용역'을 통한 인력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 하였으나, 민간인력을 통한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'경비업법'에 규정된 경비업체 시설경비 업무유형에 미포함됨에 따라, - 당초 '민간업체' → '자치구 기간제근로자 채용'으로 인력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함
		기간제근로자등 보수 (308-01)	-	-	345,000		
2	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(안심마을보안관 운영)	사무관리비 (201-01)	718,520	4,800	-	21.10.13.	- 보안관의 초소 전기료 및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예산변경함
		공공운영비 (201-02)	-	-	4,800		